

사업 연도	· ~ · · · ·	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[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[]해당, []미해당]

① 차량 번호	② 차종	③ 임차 여부	④ 보험 가입 여부	⑤ 전용 번호 판 부착 여부	⑥ 운행 기록 작성 여부	⑦ 총 주행 거리 (km)	⑧ 업무 용 사용 거리 (km)	⑨ 업무 사용 비율 (⑧/ ⑦)	⑩ 보험 의 가입 대상 일수	⑪ 실제 보험 가입 일수	⑫ 보험 가입 일수 비율 (⑪/ ⑩)	⑬ 취득 가액 (취득일, 임차 기간)	⑭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 기간 월수	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							
														⑯ 감 가 상각 비	⑰ 임차료	⑰ 유류비	⑰ 보험료	⑰ 수선비	⑰ 자동차 세	⑰ 기타	⑰ 합 계	
⑱ 감 가 상각 비 상당액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⑮ 합계												(. . . ~)										

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

⑮ 차량 번호	⑮ 업무사용금액			⑮ 업무외사용금액			⑮ 감가상각비 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⑮ 손금불산입 합계 (⑮+⑮)	⑮ 손금산입 합계 (⑮-⑮)
	⑮ 감가상각비 (상당액) [(⑮ 또는 ⑮)×⑨ ×⑮]	⑮ 관련비용 [(⑮-⑮ 또는 ⑮-⑮)×⑨×⑮]	⑮ 합계 (⑮+⑮)	⑮ 감가상각비 (상당액) (⑮-⑮ 또는 ⑮- ⑮)	⑮ 관련비용 [(⑮-⑮ 또는 ⑮-⑮)-⑮]	⑮ 합계 (⑮+⑮)			
⑮ 합계									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③⑨ 차량번호	④⑩ 차종	④① 취득일 (임차기간)	④② 전기이월액	④③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 액) 한도초과금액	④④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	④⑤ 손금추인(산입)액	④⑥ 차기이월액 (④④-④⑤)
④⑦ 합계							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

④⑧ 차량번호	④⑨ 양도가액	⑤⑩ 세무상 장부가액				⑤⑤ 처분손실 (④⑨-⑤④<0)	⑤⑥ 당기손금산입 액	⑤⑦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(⑤⑤-⑤⑥)
		⑤① 취득가액	⑤② 감가상각비 누계액	⑤③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(=④⑥)	⑤④ 합계 (⑤①-⑤②+⑤③)			
⑤⑧ 합계								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⑤⑨ 차량번호	⑥⑩ 차종	⑥① 처분일	⑥② 전기이월액	⑥③ 손금산입액	⑥④ 차기이월액 (⑥②-⑥③)
⑥⑤ 합계					

작성 방법

1.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

가. "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" 해당 여부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"해당"에 체크합니다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).

1)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%를 초과할 것, 2)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·이자·배당 소득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, 3)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

나. ① 차량번호란: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.

다. ② 차종란: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.

라. ③ 임차여부란: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여부(자가, 렌트, 리스)를 적습니다.

마. ④ 보험가입여부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
바. ⑤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부착, 미부착 또는 해당 없음)

사. ⑥ 운행기록작성여부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
아. ⑦ 총주행거리란: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
자. ⑧ 업무용사용거리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.

차. ⑨ 업무사용비율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,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적습니다.

1)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[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(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. 이하 같음]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

2)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1,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

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1,5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카. ⑩ 보험의무가입대상일수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.

타. ⑪ 실제보험가입일수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.

파. ⑭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: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(임차)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)을 적습니다.

하.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
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

가. ㉗ 업무사용금액란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나. ㉘ 업무외사용금액란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㉙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란: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(상당액)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8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명세

가. ㉚ 전기이월액란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
나. ㉛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란: ㉚란의 금액과 ㉜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㉜ 손금추인(산입)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(상당액)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(산입) 합니다.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

가. ㉞ 감가상각비 누계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.

나. ㉟ 처분손실란: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
다. ㊱ 당기손금산입액란: ㉟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.

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라. ㊲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란: ㉟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㊱ 당기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

가. ㊳ 전기이월액란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
나. ㊴ 손금산입액란: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
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